

과업지시서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2. 과업목적 및 방향

- 1) 2026년 충청북도의회 의회 운영 방향과 임시회 및 정례회 주요 의정활동 등을 도민이 알기 쉽게 요약, 생동감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도민 소통 강화
- 2) 상임위별·의원별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다양한 콘셉트와 영상기법을 활용·제작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유발
- 3) 조례특독을 통한 의원발의 신규 조례 소개 영상을 의원 개별로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 강화

3. 과업기간 및 대가 지급

- 1)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 회기마다 최종 성과품은 충청북도의회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고, 대가 지급은 충청북도의회의 검수를 받은 후 청구하여 정산한다.
- 3) 회기 종료 후 충청북도의회의 부득이한 사정상 해당 회기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기 대가는 청구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대상

- 1) 각 회기별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특별위원회 포함)
- 2) 의회 주요행사 및 동향, 의원동정, 인터뷰, 이슈사항, 회기안내 등 다양한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포함한다.

5. 분량 : 5분내외(이슈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6. 제작수량 : FullHD H264 60프레임 동영상 파일, USB 1 ea × 8회

※ 촬영 원본은 반드시 4K로 촬영

7. 제작 주요내용(contents)

1) 충북의정스케치(뉴스)

(1) 인트로, 아웃트로 CG(현 트렌드 맞춤 제작)

(2) 회기 이슈 브리핑, 키워드 의정

- 본회의 의정활동 : 회기일정, 개회사, 안건처리, 이슈인터뷰

(3) 상임위로그 :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각종 의안 심의, 현장방문 등

(4) 소공리1번지

- 의회 차원의 행사 소식 및 의원 의정 활동 등

- 대집행기관 질문 : 현장을 또는 사후 인터뷰

- 5분자유발언 : 발언 의원 현장을 포함된 영상

2) 조례특독(의원 인터뷰)

(1) 신규 조례 발의 의원의 다양한 콘셉트로 개별 제작

- 의원 의정 활동 영상, 사진, 조례관련 영상이미지 삽입

※ 콘텐츠 제작 기법, 코너명등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8. 과업 주관 기관 및 위치

1) 기관명 : 충청북도의회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

9. 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위치한 업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3에 의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로 신고를 필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4)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홍보영상물 제작 단일 실적이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 전 실적증명서 제출 *2025년 공공기관 현황(기획재정부 지정)

II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1)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목표, 방침, 과업지시서 세부 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수행한다.
- 2) 과업수행자는 충청북도의회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과업을 수행한다.
-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한다.
- 4) 충북의정스케치 제작은 기획, 구성, 시나리오 작성, 취재·촬영녹화, 편집·가공 등 일체의 제작(촬영 기자재 투입)을 의미하며, 원본 파일 및 편집된 영상 파일 일체를 제공한다.
- 5) 과업수행자는 구성, 대본 등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시나리오에 적합한 영상을 촬영·편집·녹음하여 제작한다.(근무시간 외 공휴일에도 중요한 행사나 관련 이슈가 있어 도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에 임해야 한다.)
- 6) 편집된 최종본은 FullHD 60프레임이상 MP4 형식으로 제작한다.

- 7)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제작방침

- 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충청북도의회가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제작팀을 투입해야 한다.(매월 또는 수시 제작 일정 조율)
- 2) 과업수행자는 연출자, 전문방송작가, 촬영감독, 편집감독, CG전문가, 전문 아나운서 등 6명 이상의 제작팀을 구성한다.
- 3) 과업수행자는 상황에 따라 DSLR 5대 이상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스텝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작가는 방송 경력 3년 이상의 구성작가를 지원해야 함.
- 5) 작가는 연출자와 협의하여 사전 제작 구성안을 작성한다.
- 6) 작가는 메인 녹화 당일 참석해 현장 상황에 대처한다.
- 7) 촬영감독은 구성안에 들어갈 내용을 예측하여 현장에서 연출자와 협의하여 다양한 화면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촬영 요청에도 최대한 응해야 한다.
- 8) 촬영·편집이 완료되면 자막 등 수정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9) 촬영자는 촬영 경력 2년 이상의 DSLR 전문 카메라 감독을 지원해야 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매월 계획되는 촬영 일정에 투입 가능해야 한다.
- 10) 편집자는 촬영 종료 2일 이내 영상 클립을 가편집하여 편집 구성 후 보고한다.
- 11) 타이틀과 자막은 현 트렌드에 맞게 제작하되 방송급 수준의 모션그래픽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다.

- 12) 진행자는 방송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아나운서 또는 방송 리포터로 한다.
- 13) 음향은 저작권에 문제 되지 않는 BGM과 FX를 사용한다.

Ⅲ 제작 절차

1. 제작 및 운영계획

-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이후 1주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영상 제작에 따른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 기획안
 - 기획 구성안(큐시트 등)
 - 전담 제작진 명단(PD, 구성작가, 촬영감독, 편집자, 음향, 아나운서(진행자))
 - 타이틀 CG 및 범퍼 구성안(필요시 그림콘티 포함)
 - 소셜미디어용 썸네일 이미지 가안
 - 파일 송달 계획(촬영본, 대본, 완성파일 등이 담긴 USB 납품)
- 2) 제작 전에 제작 예정 영상의 기획안 및 구성안을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 3) 출연자(진행자, 성우, 리포터, 아나운서 등)가 있을 시 방송에 적합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선정하되, 선정전에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충청북도의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협의를 거쳐 교체해야 한다.
- 4) 연출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연출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한번 지정한 연출자는 제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출해 일관성을 유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출자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충청북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 5) 충청북도의회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촬영 및 편집, 녹음 등 제작 전방에 걸쳐 제작 방향 등을 현장지시, 감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6) 제작된 영상의 완성은 소셜미디어 등에 업로드하기 위해 썸네일 이미지, 제목, 태그, 홍보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충청북도의회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2. 영상물 구성 및 제작 분량

1) 충북의정스케치

- (1) 인트로 CG : 10초 내외
- (2) 키워드 의정 : 30초 내외
- (3) 본회의 : 개회사, 5분자유발언, 대집행기관질문 등 30초
- (4) 상임(특별)위원회 : 위원회별로 특정 이슈중심 2분 내외
- (5) 현장 의정활동 및 의원동정 : 2분 내외
- (6) 아웃트로 CG : 10초 내외 ※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2) 조례톡톡 : 조례 소개 인터뷰, 대담 등(편당 1분 내외)

3) 샷폼 콘텐츠 : 한 회기당 2개 이상 제작

※ 내부 홍보 방향 변경 시, 계약금액내에서 제작 형식 등 변경 가능

3. 기획회의 및 시사회

- 1)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하기 전 충청북도의회 담당자, 과업수행자와 제작진 합동으로 기획 회의 개최한다.
- 2) 영상 제작 후 시사회 결과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한 후 완성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한다.

4. 납품

- 1) 최종 성과품, 촬영원본, 프로젝트 파일(파일 오픈 시 편집 가능한 상태), 클린 마스터 원본(자막과 효과가 없는 클린 영상), 유튜브 썸네일은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최종대본과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납품한다.
- 2) 영상은 FULL-HD H.264 1920x1080 MP4 60프레임 이상으로 한다.
- 3) 각 회기마다 별도 USB메모리로 납품해야 한다.(USB3.0이상)

5. 기타사항

- 1) 본 제작물(촬영된 원본 포함)에 대한 저작권과 국내외 방송권, 복제·배포권, 본 제작물을 기초로 하는 2차 저작물 작성 및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는 충청북도의회가 소유한다.
- 2) 자막폰트, 음악, 영상, 대본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해결해야 한다.
- 3) 제작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 단.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 영상물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 충원할 수 있다.
- 4) 본 과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작품,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
- 5) 영상물 내용에는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에 대한 비방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6) 과업수행자가 제작한 영상물은 충청북도의회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7) 제작된 영상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충청북도의회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수정·보완하여 납품해야 한다.

8) 제작된 영상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가 목표로 제시하는 조회수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금액 내에서 동영상 광고 집행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통한 홍보에 임해야 한다.

9) 충청북도의회는 과업수행자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과업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제작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인력, 장비 등에 있어 제출한 계획과 실제 운영 시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과업 진행 중 충청북도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장비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기획, 구성, 촬영, 편집, 음악 등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제출한 계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작된 영상이 충청북도의회의 제작목적 및 방향과 전혀 맞지 아닐 때
- 영상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충청북도의회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때

※ 충청북도의회 정책에 의해 본 영상물 제작 중단 시 계약 중도 해지 가능

10)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즉시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

IV 제작일정표

○ 충북의정스케치 회기별 1편 제작 / 폐회 후 10일 이내 납품

시기	총편수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12월
편수	8	1	1	1	1	1	1	1	1

※ 참고 2 : 2026년도 충청북도의회 회기운영 기본 일정

○ 조례특특 : 의원발의 조례 제정 현황에 따라 편수 및 일정 결정

※ 2025년 제작 건수 : 84건

붙임 2025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1부. 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제10조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참고 2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회기운영 기본 일정(안)

월 별	회 기	주요 예상 안건	비 고
1월 임시회 (제431회)	1.20.(화)~1.27.(화) (8일간)	<input type="checkbox"/>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의	- 신정(1.1)
3월 임시회 (제432회)	3.11(수)~3.20.(금) (10일간) 누계 18일	<input type="checkbox"/> 결산검사위원 선임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의	- 3·1절(3.1) - 대체공휴일(3.2) - 결산검사(4월)
6월 임시회 (제433회)	6. 16.(화)~6. 24.(수) (9일간) 누계 27일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의	- 지방선거(6.3.) - 현충일(6.6.)

※ 의회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하반기 일정은 제13대 의회 개원 후 일정 확정됨.